

#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33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0. .  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치매관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「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」에 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함

## 2. 주요내용

- 이 조례를 폐지함

## 3. 폐지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1. 8. 25. ~ 2021. 9. 14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 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 평가 : 해당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현행 조례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건강증진과**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미사보건센터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
	팀장 직위·성명	치매관리팀장 공미선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공미선 (790-5421)

## 「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」(제정 2010.11.17.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2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치매”란 퇴행성 뇌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이전에 비해 기억력, 주의력, 언어기능, 시공간능력, 실행능력,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.
2. “치매간이검진”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, 기억력, 주의집중, 계산력, 기억 회상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.
3. “치매정밀검진”이란 치매간이검진 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, 혈액 검사,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.
4. “전문의료기관”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5. “외래치료”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.
6. “본인부담금”이란 제2호나 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급여본인부담금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치매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 및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노인장기요양보험 1~3등급 판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치매검진(치매간이검진 및 치매 정밀

검진을 포함한다. 이하 “치매검진” 이라 한다) 비용지원은 하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, 실시장소, 검진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.

**제4조(비용의 부담)**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및 외래치료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절차)**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외래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.

1. 하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검진비와 치료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및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.
2.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치료비지급대상자는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.

**제6조(치매환자등록관리)**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제1019호, 2010.11.1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